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622호)	정부	2024. 12. 17.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325호)	박정 의원	2025. 2. 2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689호)	김주영 의원	2025. 4. 1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9. 17.)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9. 19.)
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
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
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
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
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
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
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항).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856호 제25조의2 및 제4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사업자가”를 “자가”로,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제8호 중 “제25조의2제2항에”를 “제25조의2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 ⑪ (생략) <u><신설></u>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 치명령) ① (생략) <u><신설></u>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 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 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u>②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 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 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 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 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 고시를 지킬 것 을 권고할 수 있다.</u>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자가----- -----

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생 략)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침 및 고시-----

-----지침 및 고시-----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1. 사업자등록번호

2. (현행과 같음)

<삭 제>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략) 8. <u>제25조의2제2항에</u>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 16. (생략) ③ · ④ (생략)	----- -----. 1. ~ 7의2. (현행과 같음) 8. <u>제25조의2제3항에</u>----- ----- ----- 9. ~ 1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